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41
------------	------

2016년 12월 20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3일
3. 상정일자

○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

(2016년 12월 20일 상정·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행정국장 이무수)

1. 제안이유

-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하여 소통과 배려차원에서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여가선용, 체력단련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으나, 개방취지와는 다르게 특정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으며, 특정단체의 독점사용으로 학

생들과 다수의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본래의 개방취지를 살려 누구나 학교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지는 부작용을 해소하며 이용자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취소 조항을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방의 원칙 신설(안 제3조)

-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함
- 사용허가여부는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 사용목적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
- 해당학교 학생과 인근주민들의 개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함

나. 사용허가 절차 규정 수정(안 제5조)

- 사용시작일 7일 전까지 허가 받아야 함
- 신청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결정
- 사용허가 할 수 없는 경우 전화, 구두,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 등으로 알림

다. 사용허가기간을 1년 범위로 제한 규정 신설(안 제6조)

라. 구기종목 1일 사용허가시간 3시간 이내로 제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마. 사용료 조정 및 공공요금 징수 규정 신설(안 제8조 별표)

바. 별표 중 공공요금은 감면 미적용 조항 신설(안 제9조제3항)

사. 사용허가 취소 조항 추가(안 제10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 민원이 제기되어 시정요구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는 경우
- 취사도구를 반입하거나 학교에서 취사, 음주,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 공작물 등 정착물을 시설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경우
- 아.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조항 추가(안 제12조제5항)
 - 학교 내 시설물 축조 금지, 축조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철거
- 자. 영리로 보는 행위 신설(안 제13조)
 - 회원을 모집하여 가르치는 행위
 - 리그 또는 토너먼트 경기 참가자에게 금전을 받는 행위
- 차. 전대로 보는 행위 신설(안 제14조)
 - 사용허가 받은 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 사용자가 대관 또는 양도하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41호로 제출되어 2016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학교를 개방하였으나, 학교시설에 대한 일부단체의 영리행위와 독점사용 등으로 인해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서울시의회는 지난 제270회 임시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과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시설 사용료를 타·시도에 맞게 조정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동 조례개정 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당시 개정 조례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¹⁾, 학부모들 또한 학생안전을 이유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반대의견²⁾을 제기함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은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하는 취지에서 동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학교개방의 원칙 및 책무성 문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의 구체화,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허가 시간의 제한, 영리행위와 전대행위의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학교시설에 따른 학생안전을 담보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교총의 입장과 대안>

- ① 교육 및 학생 안전 공간인 학교를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생활체육 활동의 활성화 장소로 주객 전도시켜서는 안 돼!
- ② 서울시의회, 학교 개방에 따른 유괴 등 각종 범죄 노출, 방화, 시설 파손 등으로 학교보안관제 시행, 허문 담장 다시 세운 이유 잊지 말아야!
- ③ 샤워시설 이용료 월 3만원 - 실 경비도 되지 않아 학교비용 부담 증가 / 물품보관 창고 활용 - 분실 시 학교 책임 소재 발생 우려 / 부대시설인 화장실은 대부분 학교 내에 있는데 외부인의 학교건물 내 진입이 가능케 하고, 청결 및 청소 문제 발생
- ④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 시설 개방 불허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게 한 것은 학교 개방 확대 강요 - 학생 안전 고려 및 학교경영에 대한 학교장 고유 권한 침해 및 과도한 책무
- ⑤ 학교에게 과도한 책무 지우기 전에 사용자의 책임 및 부당한 요구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 ⑥ 이해당사자인 학교와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교육적 사고가 아닌 선심성, 편의성 위주 조례 개정은 학교와 외부의 갈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당장 폐기해야, (2016.9.8.)

2) 의회신문고 민원 접수 35건, 10,081명 학교시설 개방 반대 의견 제출

[표-1] 조례 개정 추진 경과

일자	추진내용
2016.9.28.	서울시교육감 및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공동 기자회견
2016.9.29.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세부시행 기준 안내
2016.9.30.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실시
2016.10.18.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회 개최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2016.11.03.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안건 제출
2016.12.06.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청회 개최 (서울시의회)

나. 주요 조문에 대한 의견

1) 개방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동 개정조례안 제3조는 학교시설 개방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1항은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해서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의 개방과 관련해서는 이미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부령³⁾에서 학교시설개방을 의무화하였으며, 동 교육부령이 폐지된 이후에도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개방을 의무화하는 교육규칙을 제정하여 학교시설 개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 참조)

3) 「초·중등교육법」 제11조(법률 제5438호, 1997.12.13.제정)
제11조 (학교시설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교육부령 제749호, 1999.8.5.제정)
제2조 (개방원칙)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안 제3조제1항의 “개방한다”라는 일반론적 규정은 상위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학교시설 개방 의무화 취지와 학교 개방과 관련한 전국적인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음으로 안 제2항은 학교장이 학교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이 고려해야 할 학교 여건의 종합적 상황이란 결국 같은 조 제1항에 명시된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 재산관리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나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사용목적이 교육·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지의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2항의 규정은 이미 같은 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한 것에 사료되는 바, 입법 간소화 측면에서 안 제2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안 동조 제4항은 학교장이 학생들과 주민들의 개별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시설의 최종허가권자인 학교장이 학교시설을 원천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자에게만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학생들과 지역 주민의 개별적 이용을 막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동조 제4항에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라는 부대조건이 삽입됨으로써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정당한 계약을 통해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오해될 여지도 있는 바,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용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동 개정조례안 제5조는 학교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 사용허가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제1항에서는 사용신청자로 하여금 사용시작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장기사용의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동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⁴⁾,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⁵⁾ 규정상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학교시설을 단기로 사용할 경우 교장의 승인만 있으면 언제든지 학교시설사용이 가능하므로, 신청서 제출기한을 장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편 동조 제3항에서는 학교시설의 사용불허 시 사용신청자에게 전화, 구두,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 등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의 행정책임자인 학교장에게 공공시설인 학교시설을 불허할 경우 사용 신청자에게 불허사유를 명확히 밝히도록 함으로써 학

4)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규정의 제·개정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방과 후 프로그램, 학생수련활동(학생야영수련활동을 포함한다)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5.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6개월 이상 장기 사용의 경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5)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장의 자의적 미개방에 따른 학교현장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6).

통상적으로 공공시설인 학교시설에 대한 사용 및 허가는 행정기관7)의 통일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사용신청인의 사용신청에 대한 허가는 일반민원8)에 해당되는 것으로,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 불허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된 통일된 처리 절차9)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1일 사용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동 조례안 제6조의2제1항은 생활체육 중 구기 종목에 대하여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포함하여(안 제8조제6항) 하루 사용시간을 기본 3시간으로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1시간의 추가허용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사용신청에 대한 불허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규정한 것은(동 조례 제6조제5항) 학교 개방 확대를 강요하고 학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이며 과도한 책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 2016.9.8.)
-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나.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체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이는 일부 사용자가 학교시설을 시간의 제한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시설이 다양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러나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는 학교장이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3조제1항), 자칫 학교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이용시간의 제한은 학교장의 사용허가 권한의 범위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바,

1일 사용시간의 제한은 주말 등 시기적 특성, 이용 신청자의 이용 성격 및 목적, 이용 만족도, 학생 및 교직원, 지역주민의 공간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별표)

○ 현행 조례에서는 생활체육 및 평생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 내 체육관 시설을 사용할 경우, 시간당 사용료를 10,000원(360㎡미만), 15,000원(360㎡이상 720㎡미만), 20,000원(720㎡이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개정안 제8조는 현행 조례를 기준으로 체육관 시설사용료를 2.5배~3배 인상한 금액인 30,000원(360㎡미만), 40,000원(360㎡이상 720㎡미만), 50,000원(720㎡이상)으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2] 장기사용시 체육관 사용료 비교

(기준 : 3시간, 단위 : 원)

체육관 사용면적	종전 (80%)	현행(60%)		개정안(60%)	
		사용료	증감	사용료	증감
표준교 X	360㎡미만	14,400	12,000	△2,400 (△16.7%)	36,000 24,000 (200%)
	360㎡이상 720㎡미만	21,600	18,000	△3,600 (△16.7%)	48,000 30,000 (167%)
	720㎡이상	28,800	24,000	△4,800 (△16.7%)	60,000 36,000 (150%)
표준교 O	360㎡미만	14,400	14,400	동일	43,200 28,800 (200%)
	360㎡이상 720㎡미만	21,600	21,600	동일	57,600 36,000 (167%)
	720㎡이상	28,800	28,800	동일	72,000 43,200 (150%)

이와 같은 사용료의 급격한 인상은 현재 사용료가 종전 사용료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이 사용료로는 시설개방시 발생하는 공공요금조차 납부할 수 없다는 일선학교의 문제제기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동 개정안의 사용료 인상액¹⁰⁾은 현행 조례 개정시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제안했던 인상안(5,000원)¹¹⁾ 보다 무려 4배~6배 높은 인상분으로 인상분에 대한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타 시·도와 형평성 있는 사용료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 현행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현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이용자에게 공공요금 측량기를 설치하여 별도의 공공요금을 징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서울시가 일부 공공요금을 보전할 계획에

10) 현행 조례와 개정안 사용료 인상액(생활체육-평생교육)

체육관 사용면적	사용료(원)		
	현 조례	제출안	사용료 인상액
360㎡미만	10,000	30,000	20,000
360㎡이상 720㎡미만	15,000	40,000	25,000
720㎡이상	20,000	50,000	30,000

11)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교육재정과-17286, 2016.8.25.)
-사용료 인상(개정조례안 대비 각 면적별 5,000원 인상)

있으며, 2017년부터는 학교시설의 전기료 인하로 단위학교별로 858만원의 전기료 절감효과¹²⁾가 생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용료 수입분은 결국 학교의 운영수익분의 변동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과 같은 요금의 대폭 인상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상기한 여건변화와 현재 협의 중인 예산의 규모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사용료 이외에 일체의 다른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학교시설 사용시 발생하는 공공요금을 별도 측정기구로 산출한 금액 또는 사용자와 협의한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 학교장이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사용료 이외의 공공요금 징수를 금지한 것은 당초 학교장의 자의적인 공공요금 책정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학교가 별도의 공공요금 측정장치를 구축하지 않는 이상 공공요금 협상과정에서 동일한 혼란이 재발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사용의 경우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별도의 공공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사용료에 포함해 징수하거나 이에 대한 보전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그 밖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동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동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한 총칙 규정으로, 조례의 설치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을 열거하고 조례에

12) '학교전기요금 개편...점퐁, 냉골교실 사라질 듯'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2016.12.19.)

사용되는 용어를 보다 명료하게 규정함으로써 총칙으로서의 법령 체계의 적정성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0조는 학교내 음주, 취사, 불법 시설물 축조, 영리 및 전대 행위 등 사용자의 적절치 않은 행위 등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사유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이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사용자의 책임감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 학교개방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함.
- 단기사용의 경우 장기사용과 같은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 신청 기일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학교시설 사용허가 불허시 법률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여 통지하도록 함.
- 별표의 사용료 이외에 일체의 다른 사용료나 공공요금의 징수를 금지함.
- 체육관 시설 사용료를 인하함.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441
----------	------------

제안연월일 : 2016년 12월 20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사용료 및 공공요금의 보전분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마련 중인 점을 감안하여 사용료 일부를 인하하고, 본래의 개방취지를 살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 나.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개방함에 있어 해당학교의 학생과 인근주민들의 개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제4항).
- 다. 학교시설을 단기사용할 경우에는 장기사용과 같이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 신청 기일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안 제5조제1항).
- 라. 학교장은 학교시설 사용 불허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그 결과를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5조제3항).
- 마. 1일 사용허가 시간을 3시간을 제한하되 사용신청자에게 사정이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안 제6조의2제3항).

바. 학교장은 별표의 사용료 이외에 일체의 다른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징수할 수 없음(안 제8조제4항).

사. 사용료를 일부 조정함(별표).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개방한다”를 “개방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자율적으로”를 삭제하며, 동조 제4항 중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을 “학교장은”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에 “다만, 단기사용의 경우에는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 신청 기일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동조 제3항 중 “전화, 구두,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6조의2제2항 중 “하며,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사용허가시간은 4시간을 넘을 수 없다”를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자에게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안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학교장은 별표의 사용료 이외에 일체의 다른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안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학교시설 사용료(제4조 및 제8조 관련)

【단위: 원, 기준 1시간】

시 설 명		생활체육·평생교육		일반·행사	비 고
일 반 교 실		10,000		2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 육 관		360㎡미만	15,000	40,000	
		360㎡이상 720㎡미만	20,000	50,000	
		720㎡이상	25,000	60,000	
운 동 장	일 반	20,000		50,000	1시간
	인 조 잔 디 (천연잔디포함)	40,000		100,000	
샤 위 시 설		30,000			1개월
창고(물품보관)		30,000			
그 밖 의 학 교 시 설 (특별교실, 시청각실, 컴 퓨터실, 수영장, 농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			

※ 체육관의 면적기준은 실제 사용면적을 의미함.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학교장은 지역 주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p>	<p>제3조(개방의 원칙)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한다.</p> <p>②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p> <p>③ 학교시설의 사용목적은 교육·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④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자유로운 개별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개방의 원칙)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p> <p>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학교장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자유로운 개별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사용허가 신청) 학교시설을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식 1]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신 설></p>	<p>제5조(사용허가 절차) ① 학교시설을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시작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단서 신설></p> <p>②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p>	<p>제5조(사용허가 절차) ① 학교시설을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시작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다만, 단기사용의 경우에는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 신청 기일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p> <p>②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 data-bbox="159 400 293 432"><신설></p> <p data-bbox="159 603 293 635"><신설></p> <p data-bbox="159 1273 573 1305">제8조(사용료) ① ~ ③ (생략)</p> <p data-bbox="159 1321 801 1401">④ <u>학교장은 별표의 사용료 이외에 일체의 다른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u></p>	<p data-bbox="842 308 1451 387"><u>검찰 때에는 학교장이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u></p> <p data-bbox="842 403 1451 531">③ <u>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자에게 전화, 구두,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u></p> <p data-bbox="808 603 1451 778">제6조의2(1일 사용허가시간 제한) ① 별표의 생활체육 중 구기종목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용자가 1일 기준 3시간 이내에서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p> <p data-bbox="842 794 1451 105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추가사용허가시간은 1시간 이내로 <u>하며,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사용허가시간은 4시간을 넘을 수 없다.</u></p> <p data-bbox="842 1074 943 1106"><신설></p> <p data-bbox="808 1273 1312 1305">제8조(사용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 data-bbox="842 1321 958 1353"><삭제></p>	<p data-bbox="1491 403 2101 579">③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자에게 「<u>민원처리에 관한 법률</u>」 제27조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p> <p data-bbox="1458 603 2101 683">제6조의2(1일 사용허가시간 제한) ① (개정안과 같음)</p> <p data-bbox="1491 794 2101 92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추가사용허가시간은 1시간 이내로 <u>한다.</u></p> <p data-bbox="1491 1074 2101 1249">③ <u>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자에게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u></p> <p data-bbox="1458 1273 1995 1305">제8조(사용료) ① ~ ③ (개정안과 같음)</p> <p data-bbox="1491 1321 2101 1401">④ <u>학교장은 별표의 사용료 이외에 일체의 다른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u></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다.</p> <p><신설></p> <p><신설></p> <p>【별표】</p> <p>학교시설 사용료(제4조 및 제8조 관련)</p> <p>【단위: 원】</p>				<p>⑤ 사용료 산정기준에 미달하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p> <p>⑥ 사용시간은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포함한다.</p> <p>【별표】</p> <p>학교시설 사용료(제4조 및 제8조 관련)</p> <p>【단위: 원】</p>				<p>된다.</p> <p>⑤ (개정안과 같음)</p> <p>⑥ (개정안과 같음)</p> <p>【별표】</p> <p>학교시설 사용료(제4조 및 제8조 관련)</p> <p>【단위: 원, 기준: 1시간】</p>						
시설명	생활체육·평생교육	일반·행사	비고	시설명	생활체육·평생교육	일반·행사	비고	시설명	생활체육·평생교육	일반·행사	비고			
일반교실	10,000	2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일반교실	10,000	20,000	공공요금은 별도 측량기 구로 산정 출한 액 또는 사용자와 협의 한 금액 을 징수	일반교실	10,000	2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360㎡미만	10,000		40,000	체육관	360㎡미만		30,000	40,000	체육관		360㎡미만	15,000	40,000
	360㎡이상 720㎡미만	15,000		50,000		360㎡이상 720㎡미만		40,000	50,000			360㎡이상 720㎡미만	20,000	50,000
	720㎡이상	20,000		60,000		720㎡이상		50,000	60,000			720㎡이상	25,000	60,000
운동장 (천연잔디포함)	일반	20,000	1시간	운동장 (천연잔디포함)	일반	20,000	1시간	운동장 (천연잔디포함)	일반	20,000	50,000			
	인조잔디	40,000			100,000	인조잔디			40,000	100,000				
샤워시설	30,000		1개월	인조잔디 (천연잔디포함)	40,000	100,000	1개월	샤워시설	30,000		1개월			
창고(물품보관)	30,000			창고(물품보관)	30,000									
그 밖의 학교 시설 (특별교실, 시청각실, 컴퓨터)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			그 밖의 학교 시설 (특별교실, 시청각실, 컴퓨터)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			그 밖의 학교 시설 (특별교실, 시청각실, 컴퓨터)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실, 수영장, 농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		실, 수영장, 농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		실, 수영장, 농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	
※ 체육관의 면적기준은 실제 사용면적을 의미함.		※ 일반교실은 1실, 1시간을 기준으로 함. ※ 체육관은 1시간을 기준으로 함.		※ 체육관의 면적기준은 실제 사용면적을 의미함.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시설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의 교육·체육·문화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에 따라”를 “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각급 학교”란”을 ““학교시설”이란”으로, “를”을 “의 시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일시사용”이란”을 ““일시사용”이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로, “것을 말하며, “사용료”란 일시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를 “행위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용자”란 학교시설의 일시사용을 허가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개방의 원칙)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학교시설의 사용목적은 교육·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자유로운 개별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례에 따라”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다만, 화장실은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교시설을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시작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단기사용의 경우에는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 신청 기일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학교장이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자에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용허가기간) ① 학교시설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갱신하는 사용허가기간은 갱신

하기 전의 사용허가기간을 넘을 수 없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1일 사용허가시간 제한) ① 별표의 생활체육 중 구기종목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용자가 1일 기준 3시간 이내에서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추가사용허가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자에게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⑤ 사용료 산정기준에 미달하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⑥ 사용시간은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포함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별표 중 공공요금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교장은 사용자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활동과 학교시설의 유지·보존 및 활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지시”를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6호부

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용자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학교장이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경우
7. 학교에 취사도구를 반입하거나, 학교에서 취사, 음주,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8. 공작물 등 정착물을 시설하는 경우
9.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0. 사용허가 받은 학교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전대하려는 경우

제10조제2항 중 “제2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는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시”는 “요구”로, “주의의무”는 “질서유지 및 주의의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사용자는 학교 내에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축조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영리로 보는 행위) ① 제10조제1항제9호의 영리로 보는 사용자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회원을 모집하여 금전을 받고 가르치는 행위

2. 리그 또는 토너먼트 등의 경기 참가자에게 금전을 받는 행위

3. 제1호와 제2호의 목적으로 모집광고를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리로 보지 아니한다.

1. 관할청에 비영리로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가 선수육성 또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위로써 비영리임을 입증한 경우

2. 그 밖에 사용자가 회원 또는 참가자로부터 물품구입이나 사용료 납부 등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받는 경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전대로 보는 행위) 제10조제1항제10호의 전대로 보는 사용자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용허가 받은 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2. 사용자가 사용허가 받은 학교시설을 대관하거나 그 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별표]

학교시설 사용료(제4조 및 제8조 관련)

(단위 : 원, 기준 : 1시간)

시 설 명		생활체육·평생교육		일반·행사	비 고
일 반 교 실		10,000		2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체 육 관	360㎡미만		15,000	40,000	
	360㎡이상 720㎡미만		20,000	50,000	
	720㎡이상		25,000	60,000	
운동장	일 반	20,000		50,000	1시간
	인 조 잔 디 (천연잔디포함)	40,000		100,000	
샤워시설		30,000		1개월	
창고(물품보관)		30,000			
그 밖 의 학 교 시 설 (특별교실, 시청각실, 컴퓨 터실, 수영장, 농구장, 테 니스장, 도서관 등)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 교장이 결정			

※ 체육관의 면적기준은 실제 사용면적을 의미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학교시설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의 교육·체육·문화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u>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절차와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절차와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각급 학교</u>”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u>서울특별시립학교</u>를 말한다. 2. “일시사용”이란 학교시설을 일정 기간에 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u>것을 말하며, “사용료”란 일시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u>을 말한다. 3. “사용자”란 <u>제5조에 따라 학교시설의 일시 사용을 허가받은 단체 또는 개인</u>을 말한다.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학교시설</u>”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u>서울특별시립학교의 시설</u>을 말한다. 2. “일시사용”이란 <u>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u> 학교시설을 일정 기간에 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u>행위</u>를 말한다. 3. “사용자”란 <u>학교시설의 일시 사용을 허가받은 개인이나 단체</u>를 말한다.
<p>제3조(책무) <u>서울특별시교육감과 학교장은 지역 주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u></p>	<p>제3조(개방의 원칙) ① <u>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u></p> <p>② <u>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u></p> <p>③ <u>학교시설의 사용목적은 교육·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u></p> <p>④ <u>학교장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자유로운 개별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4조(사용료 징수대상) <u>이 조례에 따라</u> 일시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학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생략) 	<p>제4조(사용료 징수대상) 일시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학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7. 그 밖에 학교 내 부대시설(<u>다만, 화장실은 제외한다.</u>)</p> <p>제5조(사용허가 신청) 학교시설을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u>[서식 1]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서 신설></u></p> <p><신설></p> <p><신설></p> <p>제6조(사용허가) ① <u>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재산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의 일시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목적과 내용이 시설의 본래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u></p> <p>② <u>학교장은 학교시설물의 바람직한 이용을 위해 수영장을 제외한 학교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u></p> <p>③ <u>학교장은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용내용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재임대하여 운영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하며,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u></p> <p>④ <u>사용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학교장이 이용시간 등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u></p> <p>⑤ <u>학교장은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자에게 서면으로 불허사</u></p>	<p>7. 그 밖에 학교 내 부대시설</p> <p>제5조(사용허가 절차) ① 학교시설을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u>별지 제1호 서식</u>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u>사용시작일 7일 전까지</u> 학교장의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u>다만, 단기사용의 경우에는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 신청 기일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u></p> <p>② <u>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학교장이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u></p> <p>③ <u>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자에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u></p> <p>제6조(사용허가기간) ① <u>학교시설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u></p> <p>② <u>사용자는 사용허가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갱신하는 사용허가기간은 갱신하기 전의 사용허가기간을 넘을 수 없다.</u></p> <p><삭제></p> <p><삭제></p> <p><삭제></p>

현행	개정안
<p><u>유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u></p> <p><u><신설></u></p> <p>제7조(사용허가 대장의 비치) (생략)</p> <p>제8조(사용료) ① ~ ④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 ② (생략)</p> <p><u><신설></u></p> <p>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학교장은 <u>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1. ~ 4. (현행과 같음)</p> <p>5. 학교장의 <u>정당한 지시에</u> 응하지 않는 경우</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제6조의2(1일 사용허가시간 제한) ① 별표의 생활체육 중 구기종목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용자가 1일 기준 3시간 이내에서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추가사용허가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u></p> <p><u>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자에게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u></p> <p>제7조(사용허가 대장의 비치) (현행과 같음)</p> <p>제8조(사용료) ① ~ ④ (현행과 같음)</p> <p><u>⑤ 사용료 산정기준에 미달하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u></p> <p><u>⑥ 사용시간은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포함한다.</u></p> <p>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별표 중 공공요금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학교장은 <u>사용자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활동과 학교시설의 유지·보존 및 활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u></p> <p>1. ~ 4. (생략)</p> <p>5. 학교장의 <u>정당한 요구에</u> 응하지 않는 경우</p> <p><u>6. 사용자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학교장이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경우</u></p> <p><u>7. 학교에 취사도구를 반입하거나, 학교에서 취사, 음주, 흡연 행위를 하는 경우</u></p> <p><u>8. 공작물 등 정착물을 시설하는 경우</u></p> <p><u>9.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u></p> <p><u>10. 사용허가 받은 학교시설을 다른 사람에</u></p>

현행	개정안
<p>② <u>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u>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학교장은 이 처분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u><신설></u></p> <p>제11조(사용료의 반환) (생략)</p> <p>② (생략)</p> <p>1. ~ 2. (생략)</p> <p>3. 천재지변 또는 <u>제9조제1항제1호에</u> 해당되는 경우 : 취소 당일을 포함한 잔여기간 사용료</p> <p>4. ~ 5. (생략)</p> <p>제12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학교장의 <u>정당한 지시에</u> 응하여야 하며, 사용자로서 <u>주의의무를</u> 다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게 전대하거나 전대하려는 경우</u></p> <p>② <u>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u>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학교장은 이 처분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③ <u>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u></p> <p>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천재지변 또는 <u>제10조제1항제1호에</u> 해당되는 경우 : 취소 당일을 포함한 잔여기간 사용료</p> <p>4. ~ 5. (현행과 같음)</p> <p>제12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학교장의 <u>정당한 요구에</u> 응하여야 하며, 사용자로서 <u>질서유지 및 주의의무를</u> 다하여야 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사용자는 학교 내에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축조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u></p> <p>제13조(영리로 보는 행위) ① <u>제10조제1항제9호의 영리로 보는 사용자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u></p> <p>1. <u>회원을 모집하여 금전을 받고 가르치는 행위</u></p> <p>2. <u>리그 또는 토너먼트 등의 경기 참가자에게 금전을 받는 행위</u></p> <p>3. <u>제1호와 제2호의 목적으로 모집광고를 하는 행위</u></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리로 보지 아니한다.</u></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13조(준용) (생략)</p> <p>제14조(시행규칙) (생략)</p> <p>【별표】 학교시설 사용료(제4조 및 제8조 관련) 【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시설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생활체육· 평생교육</th> <th style="text-align: center;">일반· 행사</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교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td> <td></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체육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360㎡미만 1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60㎡이상 720㎡미만 15,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20㎡이상 2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운동장 (천연잔디포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1시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인조잔디 (천연잔디포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샤워시설</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30,000</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1개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창고(물품보관)</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30,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그밖의 학교시설 (특별교실, 시 청각실, 컴퓨터 실, 수영장, 농 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 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 정</td> </tr> </tbody> </table> <p>※ 체육관의 면적기준은 실제 사용면적을 의미함.</p>	시설명	생활체육· 평생교육	일반· 행사	비고	일반교실	10,000	20,000		체육관	360㎡미만 1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360㎡이상 720㎡미만 15,000	50,000	720㎡이상 20,000	60,000	운동장 (천연잔디포함)	20,000	50,000	1시간	인조잔디 (천연잔디포함)	40,000	100,000	샤워시설	30,000		1개월	창고(물품보관)	30,000		그밖의 학교시설 (특별교실, 시 청각실, 컴퓨터 실, 수영장, 농 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 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 정			<p>1. 관할청에 비영리로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가 선수육성 또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위로써 비영리임을 입증한 경우</p> <p>2. 그 밖에 사용자가 회원 또는 참가자로부터 물품구입이나 사용료 납부 등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받는 경우</p> <p>제14조(전대로 보는 행위) 제10조제1항제10호의 전대로 보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p> <p>2. 사용자가 사용허가 받은 학교시설을 대관하거나 그 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p> <p>제15조(준용) (현행과 같음)</p> <p>제1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p>【별표】 학교시설 사용료(제4조 및 제8조 관련) 【단위: 원, 기준: 1시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시설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생활체육· 평생교육</th> <th style="text-align: center;">일반· 행사</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교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td> <td></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체육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360㎡미만 15,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60㎡이상 720㎡미만 2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20㎡이상 25,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운동장 (천연잔디포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1시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인조잔디 (천연잔디포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샤워시설</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30,000</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1개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창고(물품보관)</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30,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그밖의 학교시설 (특별교실, 시 청각실, 컴퓨터 실, 수영장, 농 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 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 정</td> </tr> </tbody> </table> <p>※ 체육관의 면적기준은 실제 사용면적을 의미함.</p>	시설명	생활체육· 평생교육	일반· 행사	비고	일반교실	10,000	20,000		체육관	360㎡미만 15,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360㎡이상 720㎡미만 20,000	50,000	720㎡이상 25,000	60,000	운동장 (천연잔디포함)	20,000	50,000	1시간	인조잔디 (천연잔디포함)	40,000	100,000	샤워시설	30,000		1개월	창고(물품보관)	30,000		그밖의 학교시설 (특별교실, 시 청각실, 컴퓨터 실, 수영장, 농 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 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 정		
시설명	생활체육· 평생교육	일반· 행사	비고																																																																		
일반교실	10,000	20,000																																																																			
체육관	360㎡미만 1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360㎡이상 720㎡미만 15,000	50,000																																																																			
	720㎡이상 20,000	60,000																																																																			
운동장 (천연잔디포함)	20,000	50,000	1시간																																																																		
인조잔디 (천연잔디포함)	40,000	100,000																																																																			
샤워시설	30,000		1개월																																																																		
창고(물품보관)	30,000																																																																				
그밖의 학교시설 (특별교실, 시 청각실, 컴퓨터 실, 수영장, 농 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 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 정																																																																				
시설명	생활체육· 평생교육	일반· 행사	비고																																																																		
일반교실	10,000	20,000																																																																			
체육관	360㎡미만 15,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360㎡이상 720㎡미만 20,000	50,000																																																																			
	720㎡이상 25,000	60,000																																																																			
운동장 (천연잔디포함)	20,000	50,000	1시간																																																																		
인조잔디 (천연잔디포함)	40,000	100,000																																																																			
샤워시설	30,000		1개월																																																																		
창고(물품보관)	30,000																																																																				
그밖의 학교시설 (특별교실, 시 청각실, 컴퓨터 실, 수영장, 농 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 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 정																																																																				

현행					개정안				
【서식 1】					【별지 제1호 서식】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제5조 관련)				
신청인	성명		전화		신청인	성명		전화	
	주소		FAX			주소		FAX	
사용 시설명					사용 시설명				
사용 목적					사용 목적				
사용 기간					사용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사용 인원					사용 인원				
기타					기타				
<p>「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의 규정을 지킬 것을 서약하고, 동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p>○○○학교장 귀하</p>					<p>「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의 규정을 지킬 것을 서약하고, 같은 조례 제5조(사용허가 절차)에 따라 위와 같이 귀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p>○○○학교장 귀하</p>				